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a href="http://www.daedeok.go.kr">http://www.daedeok.go.kr</a>

선	기관(부서)의 장
람	

**제2019-77호**  
**2019. 11. 29.(금)**

## 차      례

### 훈 령(1)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등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훈령 제441호) .....1

### 고 시(2)

- 도시계획시설사업(대전지방국세청 청사 신축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고시 제2019-136호) .....4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고시 제2019-139호) .....5

### 공 고(5)

-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공고 제2019-985호) .....6
- 2020년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복지교사 채용 공고(공고 제2019-997호) ...8
- 도시계획시설(송촌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완료 공고(공고 제2019-1003호) ...14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채용계획 공고(공고 제2019-1008호) .....15
- 도시계획시설사업(소로2-읍내26호선) 실시계획에 따른 열람공고(공고 제2019-1011호) .....28

### 입법예고(1)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19-1005호) .....31

공 람									
--------	--	--	--	--	--	--	--	--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등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19년 11월 29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훈령 제441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등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등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훈령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무직 등의 정수표 (제7조 관련)

(단위 : 명)

부서별	직종별	계	단순노무	기술인부	공사인부	환경관리 요원	행정실무원	청원경찰		
								소계	경비	단속 감시
총	계	212	38	14	28	87	36	9	6	3
본	청	180	30	13	28	87	13	9	6	3
기	획 홍 보 실	2	2 구청홍보자료수집 1 구청전략홍보사무 1							
총	무 과	17	11 취사인부 4 비서실 민원처리 보조 1 비서실 및 부속실운영지원 2 복무관리 시스템 운영 1 4대보험 및 상사학습업무지원 1 청사실내청소 2	1 영양사	2 청사실외청소			3	3	
문	화 체 육 과	3	2 체육관관리					1	1	
회	계 정 보 과	1	1 전화안내원							
세	무 과	1		1 채납징수						
민	원 봉 사 과	3	3 기록물관리 2 가족관계등록관리 1							
지	적 과	2	2 도로명주소관리 1 개별공시지가조사 보조 1							
기	후 환 경 과	90		2 불법투기단속	1 재활용인부	87 환경관리요원				
복	지 정 책 과	5					5 통합사례관리사			
사	회 복 지 과	5	2 장애인편의시설관리 1 노인일자리관리 1				3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여	성 가 족 과	5					5 드림스타트4 특화분야교사1			
도	시 계 획 과	3						3		3
안	전 총 괄 과	1	1 민방위시설관리							
공	원 녹 지 과	13	1 민원안내 및 전시시설 관리		10 공원녹지관리			2	2	
건	축 과	4		4 광고물정비 3 위반건축물정비 1						
건	설 과	21	1 지하수검침	5 노점상단속	15 도로보수 8 하수도보수 7					
교	통 과	4	4 주차장시설유지관리 2 불법주정차단속업무지원 2							
의	회 사 무 과	2	1 의원사무실 의전 및 사무보조	1 음향기기관리						
보	건 소	17					17 예방접종등록센터 1 통합건강증진사업 15 결핵관리사업 1			
복	합 문 화 센 터	10	4 도서정리				6 개관시간연장사업			
	동	3								
송	촌 동	2	2 송촌문화의집관리							
신	탄 진 동	1	1 신탄문화의집관리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추진에 따라 공무직 정수를 조정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직 관리를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부서별·직종별 정수를 조정함(별표).

- 단순노무 직종 중 총무과(청사실내청소) 2명, 지적과(개별공시지가조사 보조) 1명, 사회복지과(노인일자리 관리) 1명, 교통과(불법주정차단속업무지원) 2명을 증원
- 기술인부 직종 중 건축과(광고물정비) 1명 증원
- 행정실무원 직종 중 복지정책과(통합사례관리사) 1명, 사회복지과(의료급여사례관리사) 1명, 여성가족과(드림스타트, 특화분야교사) 2명, 보건소(결핵관리사업) 1명, 복합문화센터(개관시간연장사업) 6명 증원

# 도시계획시설사업(대전지방국세청 청사 신축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1. 대전지방국세청장이 대덕구 고시 제2018-99호(2018. 7. 6.)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여 시행중인 대전지방국세청 청사 신축사업에 대하여 세부 건축계획 변경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업무시설) 실시계획(변경) 인가 신청이 있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축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9년 11월 29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가. 사업시행지 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동 282-1번지(변경없음)

나. 사업종류 및 명칭 : 대전지방국세청 청사 신축사업(변경없음)

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 대지면적 : 18,182.1㎡
- ◆ 용도 :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
- ◆ 층수 : 지하2/지상7층
- ◆ 연면적 : 당초 20,761.76㎡, 변경 20,832.32㎡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 성명 : 대전지방국세청장
- ◆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 677(법동)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고시일 ~ 2020. 09. 30.(변경없음)

바. 관계도서 : 게재생략. 끝.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 도로명주소 부여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 사유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비고
오정동 223-27	한남로25번길 12	2019. 11. 29	건물신축	한남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25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장동 790-3	산디로132번길 46-19	2019. 11. 29	건물신축	산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1,32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신일동 36-2	산업단지로93번길 26	2019. 11. 29	건물신축	산업단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93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지적과(☎042-608-5305)로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

도로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전력공사 대덕유성지사장이 신청한 도로의 점용(굴착)허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번호	노선명	굴착목적	굴착구간	매설관경(mm)	포장종류	연장(m)	공사기간	일시점용(㎡)	영구점용(㎡)
1	대덕구 선비마을로	전력공급용 관로매설	대덕구 범동 442번지	175	보도블럭	3.0	'19.11. ~ '19.12. (착공일로부터30일)	2.44 (착공일로부터30일)	1.10 (허가일로부터10년)

2019년 11월 29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위치도 및 사진

굴착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동 442번지 일원
------	-----------------------

## 위 치 도



굴착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동 442번지 일원
------	-----------------------

## 사 진





## 2020년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복지교사 채용 공고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에게 전문분야별 교육프로그램을 제공코자 지역 아동센터에서 근무할 2020년 신규 아동복지교사 채용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1. 근무형태

- 근무기간 : 2020년 1월 ~ 12월(12개월)
- 채용인원 : 총 26명
- 근무유형
  - 전일근무 아동복지교사 : 25명
  - 단시간근무 아동복지교사 : 1명
- 근무지 : 대덕구 관내 지역아동센터

#### 2. 채용분야 및 인원

구분	교사 분야	활동내용	채용 인원	근무조건
기본분야 (전일제 · 단시간) 교사	기초학습	·기초학습교육 등 (학습코칭, 수준별 학습지도, 학습부진아 지도) ·해당분야 수업 전·후 정리(숙제 및 과제물 관리 등)	14 (전일제13, 단시간1)	○ 전일교사 -(근무지) 지역아동센터 -(근무시간) 주25시간/주 5일 1일 5시간 09:00~21:00 내 -(급여) 1,126,000원(4대보험 가입)
	외국어지도	·외국어 기초지도 ·그룹 외국어지도, 영어 등 활동 프로그램 지도 ·해당분야 수업 전·후 정리(숙제 관리 등)	6	○ 단시간교사 -(근무지) 지역아동센터 -(근무시간) 주12시간/주 3~4일 1일 5시간 이내 월60시간 미만 09:00~21:00 내 -(급여) 615,000원(고용,산재보험)
	독서지도	·독서지도(읽기, 말하기, 쓰기 등) ·그룹 독서지도, 독서활동 프로그램 지도 ·해당분야 수업 전·후 정리(숙제 및 과제물 관리 등)	3	
	예체능지도	·예체능(음악,미술)활동 프로그램 지도 ·해당분야 수업 전·후 정리(물품관리 등)	3 (음악2, 미술1)	

### 3. 채용 기준

항목		채용기준 및 우대사항	
기본 자격	공통	1) 만 19세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 근무시작일 기준 실업자 3)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사실이 없는 자 4) 기타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실이 없는 자	
분야별 세부 기준	기본 분야	기초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초등 또는 중등 학습지도 가능자</li> <li>사회복지사 2급 이상, 보육교사 1급, 교원자격증 소지자 우대</li> <li>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등 관련 경력자 및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li> <li>학습지도 관련 경력자나 관련학과 전공자 우대</li> <li>지역아동센터 실무경력자 우대</li> </ul>
		외국어 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원자격증 소지자 우대</li> <li>관련학과 학위소지자 우대</li> <li>외국어지도 관련 경력자 우대</li> </ul>
		독서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독서지도 가능자</li> <li>독서지도 관련 경력자,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li> <li>해당분야 관련학과 학위소지자 우대</li> </ul>
		예체능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체능활동지도 가능자</li> <li>예체능지도 관련 경력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 우대</li> <li>해당분야 관련학과 전공자 우대</li> </ul>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야간대학생, 주간대학원생 참여불가</li> <li>지역아동센터 대표자 참여불가</li> <li>전일근무교사 겸직 불가(단시간근무교사 비근무 시간 겸직 가능) - 근무시간이 중복되지 않더라도 아동복지교사 중복 참여는 불가</li> <li>친족 운영 센터(대표자 혹은 시설장)로는 배치 불가</li> </ul>	

### 4. 채용방법 : 공개채용

- 1차 서류심사 : 100%(적격자는 별도 평가표에 의한 심사)
  - 2차 면접심사 : 100%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별도 평가표에 의한 심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반영
- ※ 면접점수가 총점의 60점 이하인 경우에는 과락 처리됨

### 5. 채용일정

채용공고	응시원서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통보	면접시험일	채용예정자 합격자발표
2019.11.28.~ 12.5.	2019.12.4.~12.6.	2019.12.11.	2019.12.16.	2019.12.18.

※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 발표 : 합격자 개별(유선) 통보

## 6. 참여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및 접수 : 2019. 11. 28.(목) ~ 2019. 12. 6.(금)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09:00~18:00 (업무시간 내)
  - ※ 채용서류 접수 완료 이후에는 추가 서류 제출 및 보완 불가
- 접 수 처 : 대덕구청 여성가족과 드림스타트(3층)
  -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033번길 20(오정동)

## 7. 제출서류

세 부 내 용	
기본 제출서류	① 참여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포함)(별지1) ② 프로그램 지도 계획서(별지2) ③ 최종학력증명서 ④ 자격증 사본 ⑤ 경력증명서 ※ ①~③는 모든 신청자가 제출, ④~⑤은 해당자만 제출

※ 첨부서류가 미 제출된 경우 지원서에 기입한 내용은 인정하지 않음

## 8. 응시자 유의사항

- 참여신청서 경력사항 작성 시, 공공기관 근무경력은 필히 기재
- 근무경력 등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을시,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성범죄 및 아동학대 여부, 경력 및 학위검증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취소
-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범죄전력 동의서는 채용예정자에 한해서만 조회 예정
- 본 계획 및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덕구청 여성가족과 문의(608-6981, 6982)

**【별지 1】**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접수 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진 (3×4)
핸드폰번호		수신동의	동의( ) 미동의( )		
e-mail		수신동의	동의( ) 미동의( )		
아동복지교사 참여경력(해당자)	<input type="checkbox"/> 2007년 <input type="checkbox"/> 2008년 <input type="checkbox"/> 2009년 <input type="checkbox"/> 2010년 <input type="checkbox"/> 2011년 <input type="checkbox"/> 2012년 <input type="checkbox"/> 2013년 <input type="checkbox"/> 2014년 <input type="checkbox"/> 2015년 <input type="checkbox"/> 2016년 <input type="checkbox"/> 2017년 <input type="checkbox"/> 2018년 <input type="checkbox"/> 2019년		최근 실직기간 (2020 신규교사해당)	년    개월	
<b>◆ 지원분야: 지원 하고자 하는 교사 분야 3개에 <input checked="" type="checkbox"/>표를 하고, 희망 우선순위를(1·2·3순위)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분야의 근무 가능 시간대를 모두 <input checked="" type="checkbox"/>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b>					
교사분야		우선 순위	근무유형		
			전일근무		단시간근무
			(주25시간근무)	(주40시간근무)	(주12시간근무)
기본분야	기초학습	초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중·고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외국어지도	초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중·고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독서지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예체능지도	(    ) 분야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b>◆ 학력사항(최종학력만 기재)</b>					
기간		학교명	전공	졸업여부	
<b>◆ 자격 및 면허</b>					
자격증		취득연월일	발행기관	비고	
<b>◆ 관련 경력사항</b>					
기관명		기간	업무내용	비고	
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습니다.					
① 본 신청서는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참여자의 심사자료로 활용됩니다. ②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참여자 선정이 부득이하게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또는 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안)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참여자 선정 심사, 계약 체결 및 대기자 관리,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관련 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조사·연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학력, 경력, 자격, 건강보험증번호, 아동복지교사 참여경력, 최근 실직기간 등
-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12개월

동의함 /  동의안함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국민건강보험공단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건강보험증번호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제공일로부터 12개월

동의함 /  동의안함

###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와 귀하 가족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및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 제43조의2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12개월

동의함 /  동의안함

※ 신청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주민등록번호	건강보험증번호	동의 여부	서명
	신청인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별지 2】**

**기본분야 프로그램 지도 계획서**

- ★ 지원분야와 관련한 프로그램 지도능력을 심사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 ★ 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운영 가능한 프로그램 계획을 상세히 기술 바랍니다(1분기 수업 또는 10차시 프로그램 기준)
- ★ 내용이 많을 경우 다음페이지로 넘겨 작성 가능

지원분야(☑표기)	<input type="checkbox"/> 기초학습 <input type="checkbox"/> 외국어지도 <input type="checkbox"/> 독서지도 <input type="checkbox"/> 예체능지도(                    분야)		
프로그램 제목	-		
프로그램 목적 및 목표	- - -		
프로그램 지도기간 및 회기	○월~○월(○개월) 또는 ○차시		
프로그램 지도가능대상	<input type="checkbox"/> 초등저학년 <input type="checkbox"/> 초등고학년 <input type="checkbox"/> 중학생		
프로그램 지도계획	<b>* 1분기 주별 또는 차시별 수업제목 및 지도방법 상세 기술</b>		
	주별(차시)	수업제목	
	지도방법 및 내용		
프로그램 기대효과			
프로그램 운영 자기 강점	* 간략한 자기소개 및 프로그램 지도 관련 강점 상세 기술		

## 도시계획시설(송촌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완료 공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제2019-85(2019.07.05.)호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고시한 도시계획시설(송촌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이 완료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완료공고 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동 475-1번지 / 송촌어린이공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송촌어린이공원 조성)
  - 사업의 명칭 : 송촌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사업면적 : 2,020.8m<sup>2</sup>
4. 사업 시행자
  - 성 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5. 사업기간 : 실시계획 고시일 ~ 2019. 11. 1.
6. 준공(검사)일 : 2019. 11. 6.
7. 관계도서 : 게재생략. 끝.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직 채용계획 공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직근로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1 채용분야 및 인원

부 서	직 종	인원	주요업무내용	비고
총 무 과	다급(단순노무)	1명	구내식당 취사, 조리, 배식 등	취사인부
건 축 과	나급(기술인부)	1명	위반건축물 정비 등	

※ 공무직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지방공무원법」 제 2조에 의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함.

#### 2 응시자격

##### 가. 공통사항

- 공고일 현재 만 18세이상 60세 미만자(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직 등 관리 규정」 제11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자로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징계하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경력, 학력 및 이력사항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문서를 위조하여 채용된 사람

- 신체 건강한 자로서 당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는 자
- 대전광역시에 공고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나. 채용분야별 자격기준

분야(직종)	응시요건	비고
다급(단순노무)	- (거주지) 대전광역시에 공고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자 격) 조리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 (경 력) 단체급식(200인 이상) 5년 이상 근무경력자	취 사 인 부
나급(기술인부)	- (거주지)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공고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3

### 시 험 일 정

응시원서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일시	장소	
2019. 12. 9.(월)~ 12. 11.(수) 09:00~18:00(3일간) *중식시간(12:00~13:00) 제외	12. 12.(목) 예정	12. 17.(화) 예정		12. 20.(금) 예정
면접시험 일정 발표 시 확정공고				

※ 공고 및 발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홈페이지(www.daedeok.go.kr/구정소식-고시공고-채용공고)에 게시

## 4

### 시 험 방 법

가. 1차 서류전형 :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심사

나. 2차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 면접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적격(전문)성 및 인성 등을 검정
  - (취사인부) 직종의 전문성 검증을 위해 간단한 실기(채썰기) 병행
- 평정요소마다 각각 탁월(5점), 우수(4점), 보통(3점), 미흡(2점), 불량(1점)로 평정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면접시험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중 2개 항목 이상을 "미흡이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미흡이하"로 평정한 때에는 고득점 여부에 관계없이 불합격으로 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동법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채용시험의 가점대상 계급 등)에 따라 처리함.

##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 대전광역시 대덕구 홈페이지(www.daedeok.go.kr) 「채용공고」에서 내려받아 작성

나. 접수기간 : 2019. 12. 9.(월) ~ 12. 11.(수) 09:00~18:00 / ※ 중식시간(12:00~13:00) 제외

다. 접수장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총무과(2층) 교육단체팀

라.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 등을 직접 작성(구비)하여 근무시간 내에 접수하여야 함 (인터넷 접수 및 우편접수 불가, 대리접수 가능)

※ 대리접수 시 위임장 작성 제출(별지 제6호 서식) 위임하는 자와 위임을 받은 자의 신분증명서 지참

## 6 응시자 제출서류

▶ 응시원서를 제외한 모든 제출서류는 워드작성 가능하나, 서명란은 반드시 본인자필 서명

가. 응시원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나. 이력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은 경력증명서 제출(※ 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다.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라. 자격 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마.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바. 응시분야 자격·면허증 사본 1부(취사인부 분야) / 원서접수 시 원본 지참

사.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

아.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응시자가 판단되는 자료(졸업증명서, 자격증, 상훈, 경력증명서 등 / 해당자)

**【 경력증명서(6개월 이내 발급) 제출 시 유의사항 】**

- 근무기간,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발행처의 관인 또는 직인과 발급확인자의 서명(연락처 포함)이 있어야 하며,
-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기재사항 미비로 경력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이 기재되어야 함
-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과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분야 경력여부가 불명확할 경우 경력을 인정하지 않음

※ 모든 서류는 원본(복사본 제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외국어로 된 증빙자료(졸업, 성적,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함

※ 채용분야 경력사항이 기본급 호봉 산정 등에 반영될 수 있음

## 7 근무조건

가. 신 분 : 공무원직

나. 근무시작 : 2020년 1월(예정) / ※근무예정 부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근무시간 : 주 5일 / 주 40시간 (필요에 따라 토·일요일 근무)

※ 근무시간, 근무방법은 부서의 근무명령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라. 보수조건 : 대전지역공무원직노사 단체·임금협약서에 따름

— 월 기본급 : 다급 1,320,000원 / 나급 1,446,390원 (1호봉 기준, 수당 별도)

## 8 기타 안내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출원하여 주시기 바라며, 응시원서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각종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서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합격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결정 후에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서 등 부적합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를 제출하고 응시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분실한 자는 반드시 시험전일까지 응시표를 재교부 받아 응시하여야 합니다.

※ 응시표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이 없을 경우, 면접시험에 참여 불가(불합격 처리)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행 1일전까지 개별통지 합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경력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단,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3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 채용 이후 효율적인 인력운영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공무원의 직종 및 보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총무과(☎042-608-6552)로 문의 바랍니다.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성 명	응시분야	비고
	공무직 다급 (구내식당 취사)	

### ■ 제출목록(총괄표)

목 록	제출 여부
1. 응시원서(별지 제1호 서식)	
2. 이력서(별지 제2호 서식)	
3.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 서식)	
4. 자격 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6. 응시분야 자격·면허증 사본(원본지참) / 해당분야	
7.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해당자	
8.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응시자가 판단되는 자료(자격증, 졸업증명서, 상훈,경력증명서 등) / 해당자	

\* 제출한 항목에 대하여 제출 여부란에 “○” 표시



◎ 응시원서는 자필로 작성하여야 한다.

◎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된다.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종을 기재함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채용분야를 기재

(개별공시지가보조인력, 노인일자리전담인력 ...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을 정확히 기재함(주민등록상)

4. 성명 · 생년월일 · 전자우편 · (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 자 기 소 개 서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       명 :

생   년   월   일 :

.....  
.....  
.....  
.....  
.....  
.....

2019.       .       .

작성자   ○ ○ ○   (서명)

○ 작성요령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성장과정, 좌우명, 학교생활 및 전공분야, 근무 · 연구활동 및 업적, 채용직무분야 발전방안 및 근무자세 등이 나타나도록 작성
-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I.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귀하께서 제공한 모든 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 아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①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메일, 전화번호, 학력·경력사항, 자격·면허 소지사항 등

나.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시험 관련 자격·면허·경력 등 조회·확인(신원조사·신원조회 포함)

####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달성할 때까지

#### ③ 동의거부 권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안함 <input type="checkbox"/>
2019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 II.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①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 주민등록번호, 자격번호 등

나) 수집 및 이용목적

- 공무원 채용시험 관련 자격·면허·경력 등 조회·확인(신원조사·신원조회 포함)

####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달성할 때까지

#### ③ 동의거부 권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안함 <input type="checkbox"/>
2019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 위 임 장

위임 받은 사람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위임자와의 관계
위임한 사람 (응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위임사유

※ 지참서류 : 위임한 사람과 위임 받은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시행하는 공무원 채용시험 원서접수에 관한 사항 일체를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2019. . .

응시자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 도시계획시설사업(소로2-읍내26호선) 실시계획에 따른 열람공고

1. 법동 433번지 일원 미 개설된 도로를 개설하여 주민 도로이용 불편사항 해소 및 효율적인 도로망 구성을 위해 추진하는 소로2-읍내26호선 도로개설사업(동성교회 옆 도로개설사업)에 대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 등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관계도서를 열람하신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도서는 대덕구청(건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입니다.

2019년 11월 29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다 음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동 433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소로2-읍내26호선)
- 2) 사업의 명칭 : 동성교회 옆 도로개설사업

다. 사업의 규모

구 분	도 로 명	사업내용	위 치		비고
			시 점	종 점	
도로	소로2-읍내26호선	도로개설 L=120m, B=8.0m	법동 433	법동 384-3	일부 개설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033번길 20(오정동), 대덕구청장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19. 고시일 ~ 2020.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별첨

사. 관계도서 : 게재생략(공람 장소에 비치)

아.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휴일포함

자. 열람장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건설과(☎042-608-5212). 끝.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편입용지조서

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m <sup>2</sup> )		소유자		소유자 이외 권리자 사항		비고
				지적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주소	성명	
1	법동	384-3	도로	844	125	대덕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033번길20 (오정동)			
2	법동	402-5	철	731	46	1. 국토교통 부	국			
3	법동	402-1	철	290	246	국토교통부	국			
4	법동	438-1	도로	88	25	국토교통부	국			
5	법동	414-1	도로	258	169	대덕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033번길20 (오정동)			
6	법동	413-1	전	74	74	국토교통부	국			
7	읍내 동	369-1	철도	268	260	국토교통부	국			
8	법동	417-3	도로	213	213	대덕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033번길20 (오정동)			
9	법동	417	전	198	35	재단법인기독교 교대한*** ****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	충남 논산시 계백로 97 9 (취암동)	놀피새마을 금고	근저당권, 지상권
10	법동	417-2	철	37	5	국토교통부	국			
11	법동	433	전	473	14	재단법인기독교 교대한*** ****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	충남 논산시 계백로 97 9 (취암동)	놀피새마을 금고	근저당권, 지상권
12	읍내 동	569	구거	327	108	국토교통부	국			
13	법동	369	도로	21,629	88	농림축산 식품부	국			
계				25,430	1,408					

※ 상기 토지상 지장물건 일체 포함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30018호 '19.8.6.)에서 위임하고 있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019년 11월 29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 2.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30018호 '19.8.6.)에서 위임하고 있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

- 구청장은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

다.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인사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함(안 제3조).

라. 적극행정 총괄부서와 인사위원회의 소관부서가 달라 원활한 심의를 위



해 별도의 사무직원을 두도록 함(안 제4조).

마. 수당 및 운영세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 4.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9년 12월 1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기획  
홍보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및 보내실 곳

- 1) 서 면 : 우 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033번길 20(오정동)  
대덕구청 기획홍보실
- 2) 전 화 : 042-608-6045
- 3) F A X : 042-608-3811
- 4) E-mail : 0628ljh@korea.kr

#### 6.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획홍보실 담당자(전화 : 042-608-60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가 심의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제4조(사무직원) ① 「지방공무원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해 위원회에 별도의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영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하고 서기는 적극 행정 총괄업무 소관 팀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5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지원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 법령]

###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6조(전담부서의 지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는 적극행정 책임관과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제7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적극 행정 추진 과제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
3. 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제5조에 따른 의견의 제시(이하 "사전컨설팅"이라 한다)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극행정 예방·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 또는 우수공무원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공직 사회의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적극행정 관련 교육)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8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 및 업무 여건을 고려하여 적극행정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적극행정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술 또는 환경

의 변화로 개선이 필요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치법규를 입안하거나 정비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자치법규를 해석할 때에는 적극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취지를 벗어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7조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2조에 따라 공무원이 지원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
5.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사위원회(시·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가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기별로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경우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 □ 지방공무원법

제7조(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에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제외하되, 그중 시의 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별로 인사위원회를 두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는 필요하면 제1인사위원회와 제2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는 16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에 두는 인사위원회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수, 위원 선정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인사위원회는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제5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시·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의 위원과 제2인사위원회의 위원은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인사를 담당하는 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조기관의 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원의 자격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험위원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따로 위촉할 수 있다.

1.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재직하는 사람
3.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 조직의 장
5.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의 지역단위 조직의 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1.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3. 지방의회의원

⑦ 제5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⑧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⑨ 위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인사위원회의 기능 등)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및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
2.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른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전보임용 기준의 사전의결
3. 승진임용의 사전심의

4.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 의결 또는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공무원의 임용·교육훈련·보수 등 인사와 관련된 조례안 및 규칙안의 사전심의

6. 임용권자의 인사운영에 대한 개선 권고

7.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인사위원회 관장에 속하는 사항

② 인사위원회는 제1항의 기능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임용권자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제1항제4호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실 조사를 하거나 증인의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전의결 대상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복수의 인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각 인사위원회의 사무분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등에 관한 절차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인사위원회의 기관) ① 인사위원회에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두며, 위원장은 시·도의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는 부시장·부지사·부교육감,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인사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 다만,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에 두는 인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해당 인사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② 제7조제1항에 따라 시·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르고, 제2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부지사(「지방자치법」 제110조제6항 후단에 따라 특정지역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시장·부지사를 말한다) 또는 인사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인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의2(위원의 신분보장)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공무원인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7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자격요건이 상실되거나 제7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당연히 퇴직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장기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외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 직에서 면직되지 아니한다.

제10조(인사위원회의 회의)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에 두는 인사위원회의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이 지정한다)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7조제5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전체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 경우 그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인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제3호·제4호 및 제62조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제8조제1항제4호 및 제62조와 관련된 심의·의결에 한정한다.

1.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심의·의결의 대상자인 경우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해당 심의·의결의 대상자인 경우

3. 위원 본인이 심의·의결 대상자의 직근 상급자이거나 징계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직근 상급자였던 경우

② 제8조제1항제3호·제4호 및 제62조의 심의·의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인사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1. 인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제8조제1항제3호·제4호 및 제62조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려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10조의3(임시위원의 임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조의2에 따른 인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으로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 수가 제10조제2항에 따른 인사위원회 회의 구성원 수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구성원 수의 3분의 2가 될 때까지 임시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 해당 심의·의결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임시위원의 자격, 실비보상, 비밀누설 금지 등에 관하여는 제7조제5항·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준용하고,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6항을 준용한다.

제11조(인사위원회의 사무직원) ① 인사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해당 기관의 장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건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건	비고
	찬성	반대		